

##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6. 6. 14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6. 6. 14

라. 상정일자 : 제44회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총무위원회(96. 2. 1)상정

마. 의결일자 : 제46회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총무위원회(96. 6. 19)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강석준)

#### 가. 제안이유

○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인적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부천시 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장학생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서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중에서 부천시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

(안 제3조, 제5조, 제6조)

○ 장학금의 재원과 장학생의 정원은 매년 이를 시장이 정함(안 제6조, 제11조)

○ 시장은 필요시 장학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12조)

○ 장학금 운영을 위탁받은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는 장학금지급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3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장학재단 설립시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자녀 장학금 등의 장학금을 통합할 수 있습니까?	○ 흡수가 가능한 것이 있고 성격이 다른 것은 흡수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 전학년 성적이 10/100인데 기준을 완화하여 선발할 수는 없습니까?	○ 완화하여 선발할 수 있는 신축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타단체 등에서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 조례안에 자격상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장학재단 설립계획서상의 장학재단설립추진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여 총무위원회와 협의하겠습니다.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8. 체계적인 심사내용

- 없음

##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

의안번호	제114호
의 결	96. 6. 28
년 월 일	(제46회)

제출년월일 : 1996. 6. 14

제 출 자 : 부천시장

## □ 수정이유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인적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부천시장학금지급 조례를 제정코자 함.

## □ 주요골자

- 장학생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서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중에서 부천시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안 제3조, 제5조, 제6조)
- 장학금의 재원과 장학생의 정원은 매년 이를 시장이 정함  
(안 제6조, 제11조)
- 시장은 필요사 장학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12조)
- 장학금 운영을 위탁받은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는 장학금지급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3조)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2. "중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를 말하며 교육법 제103조의3 및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는 제외한다.
3. "고등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교육법 제107조의3 및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4. "대학(전문대학 포함)또는 대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포함)또는 대학교를 말하며 교육법 제12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은 제외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자급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학생으로서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학기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되는 자
  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되는 자
  3. 대학(전문대학 포함)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이 해당학과에서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되는 자
  4.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서 전학기 중 도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 또는 전국단위 대회에서 5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자는 제외한다.

제4조(장학생의 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매학기 개시 1월 이전에 학교장, 교육장 또는 대학장(총장포함)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장학생의 선발,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천 시장학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장학생의 선정)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개시 20일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② 장학금지급대상인원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부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때
3.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4. 장학금지급 결격 사유로 인하여 추천권자의 정지신청이 있는 때
5. 장학금 사용기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히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장학금 사용기준)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교 납부금과 교재대
2. 학용품비 및 통학에 소요되는 교통비

제11조(장학기금 재원) 장학기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한다.

제12조(장학사업 위탁운영) 시장은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장학사업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장학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결산 및 검사등) 위탁받은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는 장학금 지급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